

부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6년 3월 8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6년 3월 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2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년 3월 15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 설명자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 광 택)

□ 제안이유

- 「자연재해대책법」 개정(2005. 1. 27. 법률 제7359호)으로 각종 개발계획 및 사업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요인의 전문적 검토를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부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2조)
-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해 업무담당국장으로 함.(안 제4조)

- 검토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하도록 정함.(안 제7조)
 -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 요인 검토
 -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검토
 -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검토
- 검토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3.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답	변
○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 개정(안)인지 ?		○ 그렇음.	
○ 경기도 조례 표준(안) 이외의 추가되거나 정비한 내용은 있는지 ?		○ 없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 의결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제491호
의결 년월일	2006. 3. 17 (제125회)

제출년월일 : 2006. 3. 8.

제출자 : 부천시장

□ 제안이유

- 「자연재해대책법」 개정(2005. 1. 27. 법률 제7359호)으로 각종 개발계획 및 사업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요인의 전문적 검토를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부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도록 있도록 정함.(안 제2조)
- 나.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해 업무 담당국장으로 함.(안 제4조)
- 다. 검토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검

토하도록 정함.(안 제7조)

-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 요인 검토
-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검토
-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검토

라. 검토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부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부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정하는 부천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위촉 및 구성) ①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

②검토위원회의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부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위촉장의 교부) 위원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으로 위촉한 자에 대하여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연재해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검토위원회를 대표하고, 검토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검토위원회의 운영) ①검토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위원 중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②검토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 중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검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제2항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로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임기에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공적·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
4. 기타 본부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제7조(기능) 검토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8조(검토의견 제출)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요청서에 대하여 제7조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서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현지조사) ①위원장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검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협의의견 반영) 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①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 협의검토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

②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록) ①제5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각 회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검토사항
4. 토의진행사항
5. 위원발언 내용
6.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간사) ①제5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③간사는 다음 각 회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4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